예 산 총 칙

2010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ㆍ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154,501,236	34,635,037
일반회계			812,651,302	24,379,539
특별회계			341,849,934	10,255,498
	공	기업특별회계	98,391,458	2,951,744
		상수도사업	51,884,982	1,556,549
		하수도사업	46,506,476	1,395,194
	기	타특별회계	243,458,476	7,303,754
		공유재산관리	17,772,977	533, 189
		주택사업	35,575	1,067
		의료급여기금	4,017,945	120,538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생활안정기금운영	1,115,000	33,45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	1,539,000	46,170
		도시재정비촉진	16,950,000	508,500
		도시개발	17,994,035	539,821
		기반시설	1,131,060	33,932
		교통사업	33,517,634	1,005,529
		도시철도건설사업	149,385,250	4,481,558

- 제 2 조 세입 · 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 ·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와 같다. 단, 각 공기업특별회계는 별책으로 한다.
- 제 3 조 2010년도 채무부담행위는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 와 같다.
- 제 4조 2010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 와 같다.
- 제 5 조 2010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 와 같다.
-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764,092천원으로 한다.
- 제 7조 2010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62,600,000천원으로 한다
-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